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8235/6 전송3707-8249
 처리부서:주택개량과(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2층)담당:장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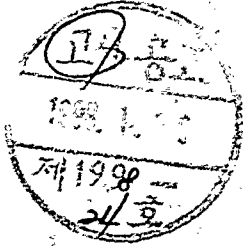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개 58533 - 22

시행일자 1998. 1. 20.

(경유) (제 1 안)

수신 :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주택재개발과장	전결	1
재개발 2 계장		법무담당관 심사필
기안	장 춘 식	협조

제목 :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외2개지구변경지정

1.강북구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외2개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지구지정 변경 내역

지구명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미아 제1지구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일대	10,534	10,579	증) 45	지구일부추가 (도로선형변경)
수유 제2지구	강북구 우이동 108번지일대	15,244	15,452	증) 208	지구일부추가 (도로추가개설)
수유 제3지구	강북구 우이동 486번지일대	7,756	7,361	감) 395	지구일부제척 (도시계획도로)

- 따로붙임 : 1. 고시안 각 1부.
 2. 지구변경 도면 각 1부. 끝.

(제 2 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게재 의뢰

1.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외2개지구변경지정

원본대조필

다. 법적근거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
행령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12조
따르붙임 : 1. 고시문 사본 각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 주택관리과장

제목 :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보고

1. 우리시 강북구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외2개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
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따르붙임 : 1. 고시문 사본 각1부.

2. 지구변경 도면 각1부. 끝.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 강북구청장

참조 : 주택과장

제목 :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통보

1. 주택58533-112호('98.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외2개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
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구청·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
록 하고 빠른시일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하여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르붙임 : 1. 고시문 사본 각1부.

2. 지구변경 도면 각1부. 끝. 140

일본대조필

서울특별시

(제 5 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통보

1. 강북구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외2개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초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기 통보합니다.

따로붙임 : 1. 고시문 사본 각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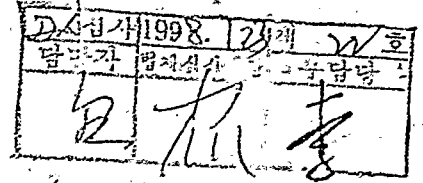
2. 지구변경 도면 각1부. 끝.

주택재개발과장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 - 29 호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1. 건설부고시 제1993-56호('93. 3. 8)로 지구지정된 미아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8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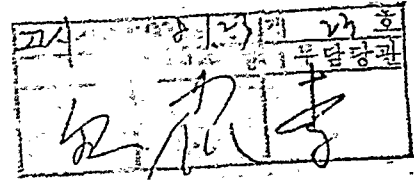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미아제1 주거환경 개선지구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일대	10,534	10,579	증)45	지구일부 추가지정

관련도면은

문서번호

A - 1998 - (3) 에 있음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 - 30 호

수유제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1. 건설부고시 제1992-245호('92.5.21)로 지구지정된 수유제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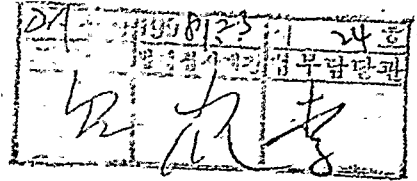
1998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수유제2 주거환경 개선지구	강북구 우이동 108번지일대	15,244	15,452	증)208	지구일부 추가지정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 - 호

· 수유제3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1. 건설부고시 제1993-63호(1996. 3.25)로 지구지정된 수유제3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강북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8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수유제3 주거환경 개선지구	강북구 우이동 486번지일대	7,756	7,361	감)395	지구일부 제척지정